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인력·장비·자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 되는 경우가 있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통합발주 받은 경우, 그 분리 가능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자와 공동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를 권장 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리발주 되어야 할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 지역업자 참여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
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 된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
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③ (생 략)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 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 에도 통합발주 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 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